

등 록 번 호
안내서-1268-002

세척제 등 리필판매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2026. 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 생 용 품 정 책 과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세척제 등 리필판매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외국 규정을 단순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안내 서 구분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 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지침서) ☒ 아니오
	☐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안내서) ☐ 아니오
기타 확인 사항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6년 7월 27일 담당자 확 인(부서장) 김 승 희 이 강 희		

이 안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과 관련하여 리필형 매장에서 위생용품 세척제·헹굼보조제를 리필판매할 때 준수하여야 할 위생 관리 수칙 등을 운영자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 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6년 7월 27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임(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3-719-1741

팩스번호 : 043-719-1730

Contents

01.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의 정의 및 대상	1
① 정의	
② 대상	
02. 위생용품 리필 판매장 등 위생관리	2
① 판매장	
② 리필 기구	
③ 리필 용기	
03.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4
① 공통 준수사항	
②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③ 그 밖의 사항	
04. 리필판매 위생용품 등 안전관리	6
① 제품 입고 시 확인 사항	
② 보관 관리	
③ 안전 관리	
05. 표시사항	7
① 리필판매하는 제품 표시사항	
② 리필용기 표시사항	
[별첨] 판매장 위생점검표	9

제 · 개정 이력서

세척제 등 리필판매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연번	제·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내용
1	안내서-1268-01	2023.1.30.	•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장에서 내용물의 품질, 안전관리 및 소분 시 위생수칙 등
2	안내서-1268-02	2026.7.27.	• 세척제 등 리필판매를 위한 판매장 위생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사항 등

①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26.12.31. 시행) 정의

-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란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

< 참고 : 위생용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영업의 범위
위생용품제조업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위생용품수입업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위생용품소분업 (‘25.12.30. 신설)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②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

-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

위생용품의 종류	적용 범위	예시
세척제	과일, 채소,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① 판매장

- ①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함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 함께 사용 가능

- ② 판매장은 해충 등으로부터 위생용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 ③ 영업소 내 위생용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 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

다만, 제품 상호 간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제외

- 구분 : 선·줄 등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어 착오·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태
- 구획 : 동일 건물 내에서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교차오염이나 외부오염물질의 혼입이 방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

- ④ 위생용품 리필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
- ⑤ 영업자는 주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주기를 설정하여 리필 판매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기록·관리

② 리필 기구

- ① 리필에 사용되는 장치, 기구 등은 제품의 제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며 위생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 ② 리필에 사용되는 저울 등은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③ 리필 장치의 펌프나 밸브에 고여있던 내용물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침용 용기·통 등 비치하고, 내용물 배출구는 리필 전후 잔여물이 없도록 유지
- ④ 장시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배출구의 내용물이 노즐 주위에 굳어 있거나 흘러 내리지 않도록 밀폐

③ 리필 용기

- ① 세척제·헹굼보조제를 리필 했을 때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고려하여 용기 재질 등을 선택
 - 식품 용기는 재사용 시 소비자 오인·섭취 등 우려가 있어 가급적 금지
 - 유리 용기에 세척제 등을 리필판매하는 경우 미끄러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급적 금지
 - PE(폴리에틸렌) 등 내용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의 용기 사용
- ② 소비자가 사용하던 용기에 리필하려는 경우, 가급적 원래의 내용물이 담겨 있던 용기에 동일한 내용물을 리필할 것을 권장
- ③ 세척제 등 리필 판매하기 전 용기의 청결 상태 등 확인
 - 잔여물 여부, 건조 여부, 용기에 금이 가거나 깨진 부분은 없는지 등
- ④ 필요한 경우 판매장에서 리필 용기를 소독하거나 UV 살균·건조 등 처리

① 공통 준수사항

- ① 위생용품을 리필판매하는 과정에서 보건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판매장·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 ② 영업신고증은 영업소 안에 보관
- ③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금지
- ④ 시정명령·폐기처분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에 따른 사후 조치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
- ⑤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종업원이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그 종업원이 위생교육 실시 가능), 그 결과를 1년간 보관

②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 ① 영업자간 거래 기록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

리필판매하는 위생용품의 구매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

- ②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 금지

유통기한이 설정된 위생용품의 경우 유통기한 내 판매

- ③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자는 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판매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제조한 위생용품 또는 ②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한 위생용품 판매

- ④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나누어 덜어서 판매 금지

③ 그 밖의 사항

- ① 위생용품은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금지

리필판매하는 위생용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 후 판매

① (국내 제조)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및 검사결과 적합 여부 확인

* 확인서류 :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

② (수입 제품) 수입신고 여부 및 수입통관단계 검사 적합 여부 확인

* 확인서류 :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 등

- ②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신고 전 위생교육(신규)을 받아야 하고, 그 후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위생교육일정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 안전 > 위생용품안전관리에서 확인

기관명 (집합교육장)	누리집 및 연락처	교육방법
한국식품정보원 (서울교육장/대전교육장)	(누리집) https://foodi.com ☎ 042-820-9000	집합교육, 온라인교육(Zoom)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과천본원)	(누리집) http://sub.ktr.or.kr/edu/ ☎ 1577-0091(교육안내 4번)	집합교육, 온라인교육(Zoom)
세스코 (세스코멤버시티 교육장)	(누리집) https://www.cescoacademy.co.kr ☎ 02-2140-0288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③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신고서 작성하고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26.12.31일 이후)

관할관청	구비서류	처리기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2. 위생교육 수료증	3일

① 제품 입고 시 확인 사항

- ① 제품 내용물 상태(변색/ 변취, 분리 및 성상 변화가 없을 것)
- ② 국내 제조 제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성적서(기준·규격 항목, 적합 여부 확인)
- ③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수입신고 여부 확인)
- ④ 유통기한(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한함)
- ⑤ 한글표시사항 기재 내용과 제품을 공급하는 위생용품제조업·수입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제품 정보 일치 여부
 - 제품명, 제조일자, 유형, 성분명, 보관상 주의사항 등
- ⑥ 제품 구매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

② 보관 관리

- 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건조한 장소에 밀폐 상태로 보관
 - 한글표시사항에 기재된 보관방법 준수
- ② 보관 중 품질 등 이상 여부 확인
 - 이물 오염 및 층 분리 등

③ 안전관리

- ① 제품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판매
 - 개봉 전이라면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늦게 입고된 제품이라도 먼저 판매 가능
- ② 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 내 판매
- ③ 리필 판매하기 전 이물 등 리필용기의 오염 여부 확인 후 리필할 수 있도록 안내
- ④ 소비자가 직접 세척제 등을 원하는 만큼 덜어서 구매하는 경우 리필 장치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리필 장치 근처에 작동 순서 등을 알기 쉽도록 게시

① 리필 판매하는 제품[대용량 용기] 표시 사항

- 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리필 판매하는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모두 제공해야 함

- 대용량 용기(리필 자판기 포함)에 표시하거나 별도 표지판에 게시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세척제에 따른 표시사항

AI 생성 이미지



② 리필 용기 표시 사항

- ① 식품으로 오인하여 음용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가 덜어가는 리필 용기에 표시사항을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비치해야 함
- 주표시면에 표시해야하는 표시사항(‘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은 정보표시면에 일괄 표시 가능
 - 표시항목 중 내용량,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재포장된 사항에 맞게 표시
 - 내용량은 공란으로 두어 최종 소비자가 덜어가는 만큼의 양을 기재 가능
- ② 용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기존 표시사항을 가급적 제거한 후 리필 용기 스티커 부착 권장

■ **주표시면** :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 **정보표시면** :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I. 총칙, 3. 용어의 정의 참고

리필 용기 표시사항 예시

위생용품

제품명 : 액★★ 세척제

영업자 명칭 및 소재지

- ◆ 소비자리필판매업소 : 초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 ◆ 제조업소 : (주)○○테, 경기도 화성시 ○○○로 ○○○

내용량 : 1L

제조연월일 : 2026.12.31.

성분명 : 정제수, 라울릴 황산나트륨, α-올레핀설포산나트륨, 레몬향(시트랄)

위생용품 유형 : 과일·채소용 세척제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 내용물이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주고 의사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사용기준

- ◆ 과일·채소용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에 과일 혹은 채소를 5분 이상 담가서는 아니된다.
- ◆ 과일·채소용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으로 과일, 채소, 음식기 또는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이 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과일 혹은 채소를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야 한다.
- ◆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에 사용한 후에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이외로 사용하지 않거나 규정사용량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과일·채소용 세척제는 식품용 기구·용기용 또는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는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는 과일·채소용 또는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는 과일·채소용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방법

세제를 2회 펌핑하여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세척해 주십시오. (1회 펌핑 시 배출량 약 1.5ml)

※ 판매장 여건에 따라 항목을 가감하여 적용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장 위생점검표				
점검일 년 월 일				
항 목	점 검 사 항	구 분		비고
		적	부	
판매장 위생관리	판매장의 청결 상태	☐	☐	
	판매장 방충·방서	☐	☐	
	덜어가는 공간과 그 외 용도 공간의 구분 또는 구획	☐	☐	
제품 위생	보관 중인 제품의 포장 및 보관상태	☐	☐	
	보관 중인 제품의 품질이상 여부	☐	☐	
	제품 선입·선출	☐	☐	
	판매 중인 제품의 품질 이상 등 확인	☐	☐	
리필 기구 위생	리필 기구(자동판매기 포함)의 청결 상태	☐	☐	
	리필 기구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	
	리필 기구 내·외부 오염 여부	☐	☐	
리필 용기 위생	리필 용기의 위생상태(이물질 오염여부 등) 확인	☐	☐	
	매장 내 세척·건조장치 구비 시, 청소 및 작동상태 확인	☐	☐	
표시사항	대용량 용기 표시 또는 별도 표지판 게시 여부	☐	☐	
	리필 용기 표시사항 스티커 비치 여부	☐	☐	
특이사항		개선조치 및 결과		

세척제 등 리필판매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발 행 일 2026년 7월 27일

발 행 인 처장 오유경

편집위원장 국장 김현선

편 집 위 원 위생용품정책과 이강희, 노지영, 김지원, 김승희, 강민승, 김민지,
최지영, 김상섭, 백소현, 천세영

발 행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